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OLDINGS CO., LTD.로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 ①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등을 한다.
  - 가. 각종 제조업, 광업
  - 나. 건설/플랜트업
  - 다. 전기, 가스, 에너지 및 수도사업
  - 라. 엔지니어링업
  - 마. 레저 및 관광호텔업 및 체육시설업
  - 바. 해상 및 육상/항공 운송업
  - 사. 도·소매업
  - 아. 음식/숙박 및 운수업
  -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창고업
  - 차. 교육서비스업
  - 카. IT/전자/통신업
  - 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파. 오락 및 문화/운동관련 사업
  - 하. 폐기물처리업
  - 가. 국내·해외자원(농업, 어업, 축산업, 가공시설, 유통 등)개발
- ②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③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
- ④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업무
- ⑤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⑥ 기술연구 및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용역수탁업
- ⑦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 ⑧ 부동산업 및 임대업/창고업
- ⑨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 ⑩ 교육서비스업
- ⑪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⑫ 정보의 운영 및 판매업
- ⑬ 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 제3조 (본점, 지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공장 등의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hic-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7조의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이분의 일 이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2% 이내의 우선배당률을 이사회가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9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 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원활한 지주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회사, 최대주주와 그 특별관계자 및 해당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기술도입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9조의 1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는 주주 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3장 사 채

#### 제13조 (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이 회사 또는 자회사의 기술도입이 필요한 경우,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권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이 회사 또는 자회사의 기술도입이 필요한 경우,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 및 주된 사무소, 지점, 공장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제4조에 규정한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4조 (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 제28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29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1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6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회사의 중요업무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 ③ 경영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0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의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0조의 1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40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0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장 계 산

### 제41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재무제표등의 비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제42조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4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대표이사는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2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의 1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 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46조 (주식의 소각)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 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익의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1. 이 정관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199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1991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정관은 1994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정관은 1995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정관은 1996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정관은 1996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정관은 1996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의 2, 제35조, 제35조의 2, 제41조,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2의 개정 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 8. 이 정관은 1998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정관은 1999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정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정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정관은 201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2,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